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 1.

여 성 가 족 부
(청소년보호환경과)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시설장 등 종사자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인재 채용의 애로사항을 경감하는 한편,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종사자(시설장 및 관리업무 책임자)의 자격기준 제한 완화(별표1 제 나호 개정)

-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전공 분야 확대
- 실무경력의 기준을 청소년 및 사회·문화 분야 관련 업무까지 확대
-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시설장에 응모가능한 공무원의 직급 하향(3급→4급)
- 시설장과 관리업무책임자 간 자격체계의 통일성 부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 수렴 예정

라. 기 타 : 1)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심사 예정

여성가족부령 제 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 나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1) 청소년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청소년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관련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사람
관리 업무 책임자	1) 청소년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청소년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관련 전문자격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사람

비고

1. "청소년 관련 분야"란 청소년(지도)학, 아동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사회학, 의학, 간호학 등에서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가. 청소년 및 사회·문화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 및 교육·활동·지도 등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 다. 의료기관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료, 상담 등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연 락 처	(02) 2100 - 6295